

動力資源部 告示〈第83-28号〉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고시개정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(동력자원부 고시 제83-25호)중 일부를 石油事業法 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3조,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3년 11월 25일
動力資源部長官

다 음

제 1호(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)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다만, B-C油 및 프로판·부탄수입시의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- (1) B-C油: 1 배럴당 0.3달러(비축기금 0.1달러, 개발기금 0.1달러, 안정기금 0.1달러)
- (2) 프로판·부탄:

가. 장기低價수입분

1메트릭톤당 188달러(비축기금+개발기금: 88달러, 안정기금: 100달러)

나. 현물시장 高價수입분

1메트릭톤당 188달러(비축기금+개발기금: 88달러, 안정기금: 100달러)에 현물시장 高價수입 CIF가격과 장기低價수입가격과의 차이의 60%를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추가하되,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대하여는 비축기금과 개발기금을 합한 금액 1메트릭톤당 88달러를 징수하고, 안정기금을 아래기준에 따라 산출 징수

① 기준CIF가격보다 低價도입분: 1메트릭톤당 100달러

② 기준CIF가격보다 高價도입분

1메트릭톤당 100달러 - (실도입CIF 가격 - 기준CIF가격) × 1.2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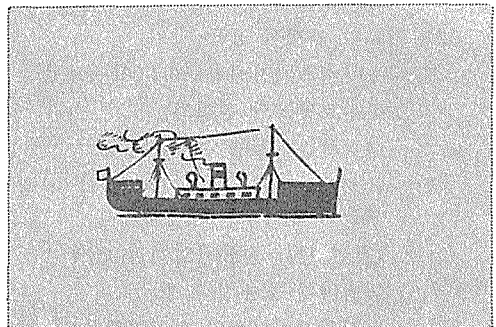
○실도입 CIF가격은 "LPG in World Markets"誌에 발표된 선적된 달의 CIF 日本도착 최고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되, 선적된 달의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전월의 실적치를 준용하고, 프로판과 부탄중 한 종류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공시가격의 프로판·부탄가격차이를 기준하여 산출 적용.

○기준CIF가격

- 精油社도입분: 프로판 497,620원/톤, 부탄 496,910원/톤을 선적후 30일내의 기금납부일의 환율로 환산한 달러화 금액에서 188달러/톤을 차감하고 이를 1.261로 나눈금액
- 正友에너지(주)도입분: 프로판 264.80달러/톤, 부탄 289.87달러/톤

부 칙

이 告示는 1983년 11월25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 다만, 1983년10월 1일 이전에 선적된 프로판·부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

商工部告示 <第83-43号>

1984년도 석유화학공업육성시행계획

석유화학공업육성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거 1984년도 석유화학공업육성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3년 12월 1일

商工部長官

나. 가격관리체계의 개선

○나프타유분가격의 점진적 자율화

- 양단지의 경쟁원리 도입
- 국제수급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처
- 麗川단지의 합리화 유도

국제가격접근

다. 수입정책

I. 需給実績 및 展望

84년도 석유화학공업육성 시행계획

(단위: 천톤)

구	분	공급능력(A)	需 要			供 給		자급률(C/B)	가동률(C/A)
			국내(B)	수 출	계	생 산(C)	수입		
'83	합성수지	1,009	864	152	1,016	909	107	105.0	90.1
	합성원료	350	754	-	754	329	425	43.6	94.0
	합성고무	125	110	12	122	87	35	79.1	69.6
	計	1,484	1,728	164	1,892	1,325	567	76.7	89.3
'84	합성수지	1,029	971	127	1,098	979	119	100.8	95.1
	합성원료	350	809	-	809	342	467	42.3	97.7
	합성고무	125	119	-	132	95	37	97.8	76.0
	계	1,504	1,899	140	2,039	1,416	623	74.6	94.1
증가율	합성수지	2.0	12.4	△16.5	8.1	7.7	11.2	△ 4.2	5.0
	합성원료	-	7.3	-	7.3	4.0	9.9	△ 1.3	3.7
	합성고무	-	8.2	8.3	8.2	9.2	5.7	0.7	6.4
	計	1.3	9.9	△14.6	7.8	6.9	9.9	△ 2.1	4.8

(註) ○합성수지: LDPE, HDPE, PP, PS, ABS

○합성원료: Capro, AN, TRA/DMT, EG

○합성고무: SBR, BR, ITR 기준

○국산우선사용원칙의 견지 - 국산이 국내수요 주도

○수출용 원자재공급조건의 개선

- 내수만으로 안정조업가능시에 수출용원자재부터 수입개방

라. 생산성향상

○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, 공정개선을 통한 절약원화, 절약에너지사업 적극추진

○추진중인 사업

• HDPE공정개선등 21개 사업

- 투자규모: 내외자 약525억원

마. 구조개선

○궁극적으로 석유화학공업과 精油工業의 결합을 기본골격으로하여 단지별 경영주체의 구축

II. 시행계획

1. 석유화학공업의 경쟁력강화

가. 원료대책

1) 나프타공급가격의 국제경쟁력 유지

2) 원료의 안정적 공급

○나프타비축기지건설 (60,000Kℓ여천)

○부족원료공급의 원활화

- 나프타관세경감: 5% → 2%

- 代替원료(Gas Oil, NGL)의 선택적 사용 유도

(관세인하, 석유사업기금 면제)

- 나프타의 효율적 활용

• 저부가가치품의 수입전환유도

○전후방 계열기업간의 결합을 단계적으로추진

• 한양화학-한양전기화학의 합병완결

○경쟁력있는 국내시설의 해외이설추진

2. 장기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

가. 시설확충방향

○정부주도에 의한 석유화학공업단지 단위의

일괄 동시건설추진지방

○고부가가치품목으로서 내수기반이 확고한

품목은 국내공장신증설로 자급을 제고

- 경쟁력위주로 개별적 선별추진

- 국내수급 및 단지의 균형있는 육성을 위해 필요한 품목

나. 추진중인 공장건설사업

사업명	사업업체	규모(천톤/년)	소요자금(백만원)			건설기간	비고
			내자	외자(천\$)	합		
BTX 제조공장	(주) 油 公	250	93,264	43,750	127,653	82.8-85.7	계속사업
SM	湖南에틸렌(주)	80	14,300	15,000	26,000	83.8-86.10	"
PS	東洋나이론(주)	30	11,310	10,403	18,800	82.6-85.8	"
PVC	(주) 렉 키	50	8,039	3,374	10,569	83.2-84.12	"
ABS	"	25	6,550	4,125	9,850	83.1-84.2	"

다. 해외투자진출추진

○원료확보면에서 산유국에 진출이 유리한 분야

• 국제경쟁력 취약분야

• 가공도가 낮은 기초원료 및 중간제품

○추진중인 사업

• (주) 렉키 : 사우디아라비아(VCM, PVC)

• 한국카프로락탐(주) : 인도네시아 (카프로락탐)

• 대성메탄올공업(주) : 방글라데시(메탄올)

라. 수급관리의 과학화

○산업연관분석 실시(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주관, KIET협조)

動力資源部 告示 (第83-29号)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告示개정

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개정고시 (動力資源部 告示 제83-25호) 중 일부를 石油事業法시행령 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3조,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1983년 12월 13일
動力資源部長官

다 음

제1호(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)의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輸入石油 1배럴당 미합중국통화1.5달러(비축기금 0.7달러, 개발기금 0.1달러, 안정기금 0.7달러)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

부 칙

이 告示는 1983년 12월 1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.